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
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
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2022.4.20. 시행)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
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「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
종합지침」(행정안전부, 2022.3.)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서울중구사랑상품권
발행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및 용어 정비

- (변경 전)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(변경 후)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조례 본문 용어 변경 : “지역화폐” → “상품권”

나. 상품권의 자금관리 (안 제3조의2)

-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금고를 설치하고,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며, 신탁계약 체결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함

다. 가맹점의 등록 (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5호)

- 가맹점 등록 시,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
-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또는 사업체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

라. 가맹점 등록의 취소 (안 제7조의2)

- 가맹점 등록 취소를 업종 또는 사업체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
- 가맹점 재등록 기간 신설

마.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(안 제9조)

-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“지역화폐 구매건별 구매금액”으로 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전통시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서 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 : lemonnala@junggu.seoul.kr
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

3) 전 화 : 02-3396-5044 (팩스 : 02-3396-8680)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연락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서울중구사랑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중구 지역화폐”를 “서울중구사랑상품권”으로 하고, ““지역화폐”라”를 ““상품권”이라”로 하고, 제2조제1호, 제3호 및 제4호 중 “지역화폐”를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“지역화폐를”을 각각 “상품권을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역화폐를”을 “상품권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보관·판매 및 환전 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,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상품권의 발행·유통·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유지보수, 상품권의 판매·충전·환전, 가맹점 등록(이하 “발행등”이라 한다)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상품권의 자금관리)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,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·판매·환전하기 위한 자금(이하 “상품권운영자금”이라 한다)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·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, 제1항, 제2항 및 제3항 중 “지역화폐”를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지역화폐는”을 “상품권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“업종으로서”를 “업종이나 사업체로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

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(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)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“등록 제한업종을” 을 “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7조의2(가맹점 등록의 취소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,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 제1호, 제2호가목, 제2호나목, 제2호다목 중 “지역화폐”를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지역화폐를”을 “상품권을”로 한다.

제9조 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5항 중 “지역화폐”를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법 제10조제2호”를 “법 제10조제2항”으로 하고, “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”을 “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(“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”이란 1회 구매 시 충전금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60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판매대행점 준수사항)

⑧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의2(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협약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판매대행점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·유통·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유지보수, 상품권의 판매·충전·환전, 가맹점 등록(이하 “발행등”이라 한다)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·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 제1항, 제2항, 제4항 중 “지역화폐”를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 제1항, 제1항제1호, 제1항2호, 제1항제4호, 제1항제5호 중 “지역화폐”를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3 제3항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1항, 제2항, 제3항 중 “지역화폐를”을 각각 “상품권을”로 하고,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지역화폐가”를 각각 “상품권이”로 하고, 제2항제1호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환전청구 및 환전)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.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.

제13조의 제목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역화폐는”을 “상품권은”으로 하고, “현금 또는 체크카드”를 “현금 또는 카드”로 하고, 제2항, 제3항, 제4항 중 “지역화폐”를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지역화폐를”을 “상품권을”로 하고, 제4항 중 “카드판매 수수료”를 “판매 수수료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, 제6항 중 “지역화폐”를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제4항 중 “지역화폐로”를 “상품권으로”로 한다.

제15조 제1항 중 “지역화폐 발매”를 “상품권 발행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및 제1호, 제4호, 제5호 중 “지역화폐”를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17조 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“지역화폐”를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18조 제3항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20조 본문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22조 본문 중 “지역화폐”를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별 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상품권 자금관리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원 안	개정안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중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,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중구 지역화폐”(이하 “지역화폐”라 한다)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하여 증표를 발행·판매하고,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(이하 “지역화폐 발행자등”이라 한다)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, 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. 2. (생략) 3. “판매대행점”이란 구청장과 제9조의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·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. 4. “운영대행사”란 구청장으로부터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. 5. “사용자”란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 6. “가맹점”이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 	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발행하는</p> <p>서울중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서울중구사랑상품권”(이하 “상품권”이라 한다) - ----- ----- ----- ----- (이하 “상 ----- 품권 발행자등”이라 한다)----- -----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체결하여 상품권의 ----- ----- 4. ----- 상품권 유통에 ----- ----- 5. ----- 상품권을 구입하여 ----- ----- 6. ----- 상품권을 사용하는 -----.

<p>제3조(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)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 및 환전 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,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, 시스템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3조(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) ①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상품권의 보관·판매 및 환전 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대행하게 ---.</p> <p>③ 상품권의 ---.</p> <p>---.</p> <p>④ 구청장은 상품권의 발행·유통·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유지보수, 상품권의 판매·총전·환전, 가맹점 등록(이하 "발행등"이라 한다)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제3조의2(상품권의 자금관리)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,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·판매·환전하기 위한 자금(이하 "상품권운영자금"이라 한다)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·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</p>
<p>제4조(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)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(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) 또는 모바일형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화폐의 권면금액은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) ① 상품권의 ---.</p> <p>---.</p> <p>---.</p> <p>---.</p> <p>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---. 상품권 소지자 ---.</p> <p>---.</p> <p>③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---.</p> <p>---.</p> <p>---.</p>

<p>제5조(유통)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중구 관내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유통)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지역화폐 사용대상) 지역화폐는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	<p>제6조(상품권 사용대상) 상품권은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
<p>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~ 4. (생략) 5.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 	<p>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----- 자는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----- <p><같은조 제5항으로 이동></p>
<p>〈신설〉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(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)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<p>제7조의2(가맹점 등록의 취소)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. 제8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	<p>제7조의2(가맹점 등록의 취소)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. (현행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,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<신설>

<같은조 제3항으로 이동>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,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(가맹점 준수사항)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
2.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
 - 가.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
 - 나.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
 - 다.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

제9조(판매대행점 준수사항)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·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②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·관리 등에 대해서는 「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」 및 「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」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10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자식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

제8조(가맹점 준수사항) -----

1. ----- 상품권 사용자를 -----
2. -----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-----

가. ----- 상품권
나. ----- -- 상품권
다. ----- -----
----- 상품권

제9조(판매대행점 준수사항) ① -----

----- 상품권의 -----
----- 상품권의 분실 -----
-----.

② -----
상품권 관련 자료제출을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상품권의 보관·관리 -----

-----.

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자식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(「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」이란 1회 구매 시 충전금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60이상 -----

<p>응하여야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우,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⑥ ~ ⑦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-----.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,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⑥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</p>
<p>제9조의2(판매대행점의 협약 등) ① 구청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지역화폐의 판매·보관·충전·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의2(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협약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판매대행점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·유통·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유지보수, 상품권의 판매·충전·환전, 가맹점 등록(이하 "발행등"이라 한다)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·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10조(운영대행사 준수사항) ① 운영대행사는 발행, 결제, 환불 등의 자료의 수집, 분석 등을 통한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.</p> <p>②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·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운영대행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, 판매실적 등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제10조(운영대행사 준수사항) ① ----- ----- 상품권 운영과 ----- ----- ② -----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상품권의 운영에 ----- ----- ----- ----- 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의2(운영대행사 선정 및 협약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 및 위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2. 지역화폐 관련 시스템 유지·보수 등에 관한 업무 	<p>제10조의2(운영대행사 선정 및 협약 등) ① ----- -----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----- ----- ----- 1. 상품권의 발행 ----- 2. 상품권 -----</p>

<p>③ 인센티브는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2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판매 수수료는 구청에서 보전하며,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.</p>	<p>③ ----- 상품권 구매자에게 -----.</p> <p>④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판매 수수료는 구청에서 보전하며, -----.</p>
<p>제14조(지역화폐 활성화 시책)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행사·공사·용역·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</p> <p>④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, 맞춤형 복지점수, 인센티브(추가충전, 캐시백 등을 포함한다)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1 ~ 2 (생 략)</p> <p>⑤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, 공익단체, 비영리민간단체,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</p> <p>⑥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, 경품제공,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상품권 활성화 시책) ① -----</p> <p>----- 상품권 유통 활성화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상품권의 판매와 -----</p> <p>----- 상품권 사용을 -----.</p> <p>④ -----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상품권으로 지급 -----, -----</p> <p>----- 상품권 사용 -----.</p> <p>----- 다만, -----.</p> <p>1 ~ 2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 상품권 사용을 -----.</p> <p>⑥ ----- 상품권 유통촉진을 -----</p> <p>-----, 상품권 홍보 -----.</p>
<p>제15조(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)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5조(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) ① -----</p> <p>----- 상품권 발행의 -----.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1.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</p> <p>2 ~ 3. (생 략)</p>	<p>제16조(중구 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) ----- 상품권 사업의 -----</p> <p>----- 중구 상품권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-----.</p> <p>1. 상품권 발행 -----</p> <p>2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<p>4.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 5.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6. (생략)</p>	<p>4. 상품권 이용 ----- 5. 상품권 가맹점 -----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1. (생략) 2. 지역화폐 업무 담당 실·국장 3 ~ 4. (생략) 5.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6. (생략) ④ (생략)</p>	<p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상품권 업무 ----- 3 ~ 4. (현행과 같음) 5. 상품권 분야의 ----- 6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.</p>	<p>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상품권 업무담당부서장이 ----- -----.</p>
<p>제20조(환수 조치)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화폐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1 ~ 2. (생략)</p>	<p>제20조(환수 조치) ----- ----- 상품권 할인액 ----- -----. 1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2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상품권의 발행 ----- ----- -----.</p>